「거창군 가지리 1323-9번지 거창더샵 포르시엘 기관추천[일반] 특별공급 관련 안내문

I 공급개요 및 일정

- 위　　치 : 경상남도 거창군 가지리 1323-9번지 일원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15~27층 7개동 총 469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예정시기 : 2023년 09월 예정
- 공급대상(예정)

주택 구분	주택형 (주거전용 면적기준)	약시 표기	세대별 계약면적(㎡)					공급 세대수
			세대별 공급면적			기타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주거전용	주거공용	공급면적			
민영 주택	066.9500	66	66.9500	26.7200	93.6700	34.4018	128.0718	42
	084.9200A	84A	84.9200	28.5566	113.4766	43.6356	157.1122	174
	084.8000B	84B	84.8000	25.8351	110.6351	43.5739	154.2090	150
	084.9000C	84C	84.9000	25.1355	110.0355	43.6253	153.6608	67
	109.9800	109	109.9800	30.5275	140.5075	56.5125	197.0200	36
	공급세대 합계							469

- 기관별 배정세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85㎡이하 민영주택 10% 범위 내 공급**

(단위 : 세대)

구분		66		84A		84B		84C		109		소계	
		확정	예비	확정	예비	확정	예비	확정	예비	확정	예비	확정	예비
국가유공자 등	경남보훈지청	1		4	(2)	3	(1)	2	(1)	-	-	10	(4)
장기복무 제대군인	경남보훈지청	-		3	(1)	3	(1)	1		-	-	7	(3)
10년이상 장기복무군인	국군복지단	1	(1)	3	(1)	3	(1)	1		-	-	8	(3)
중소기업근로자	경남지방청	1	(1)	3	(1)	3	(1)	1		-	-	8	(3)
장애인	경남도청	1		4	(2)	3	(2)	1	(1)	-	-	9	(4)

※ 각 주택형별로 배정물량이 있는 유형에 대하여만 신청가능하고, 배정물량이 없는 유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을 하더라도 무효처리 됩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고,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공동현관, 벽체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전기/기계실, 주차장,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등 그 밖의 공용면적을 의미합니다.

※ 상기 면적은 소수점 네자리 이하 단수조정으로 공급면적 및 계약면적 전체 합산 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며, 제곱미터(㎡)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공급면적(㎡) x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합니다.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 정착을 위한 정부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 종류 구분 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

세대의 40%까지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주택형별 전체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14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

▮ 특별공급 일정계획(예정)

구 분	일 정	비 고
• 입주자모집공고일	2021. 04. 29(목) (예정)	일간신문, 당사 홈페이지 및 청약홈(www.applyhome.co.kr) (추후 공개 예정)
• 견본주택 개관일	2021. 04. 30(금) (예정)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송정리 1090-11
• 특별공급 접수일자	**2021. 05. 10(월) (예정)**	**한국감정원 청약home 인터넷청약 (www.applyhome.co.kr)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 당첨자 및 동·호수 발표	2021. 05. 18(화) (예정)	한국감정원 청약home 인터넷청약 (www.applyhome.co.kr)

- 20.03.02.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은 인터넷청약(청약home)신청(서류제출 없음)이 원칙이며,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견본주택에서 접수(10:00~14:00) 가능합니다. 단, 견본주택 접수 시에는 특별공급 신청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필요서류 견본주택 별도 문의)

※ 상기 일정은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전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를 위한 예정사항으로 향후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Ⅱ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 특별공급 자격요건 및 당첨자선정 방법

구분	내용
1회한정 / 자격요건 / 자격제한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제1호 및 제8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무주택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 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람.[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 제한]**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청약 자격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등, 장애인은 제외)**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만 청약 가능함.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분	거창군 및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300만원	25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400만원	1,000만원	700만원

신청 자격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각 호에 해당 하는 자 중 각 해당 기관의 특별공급별 추천을 받으신 무주택세대구성원 (단,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 추천기관

구분	해당기관
국가 유공자	국가보훈처 경남서부보훈지청
장기복무 제대군인	국가보훈처 경남서부보훈지청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용과
중소기업근로자	경남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조정협력과
장애인	경남도청 장애인복지과

당첨자 선정 방법

- 선정원칙 : 해당 추천기관에서 자체 기준에 의거 대상자를 확정(사업주체는 선정에 관여하지 않음)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 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home 홈페이지에서 특별공급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청시 주택형 변경 불가, 미신청시 당첨자 선정(동·호수 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는 기관추천, 신혼부부 등 유형별 구분없이 특별공급 배정량의 40% 선정

▮ 특별공급 유의사항

구분	내용
유의 사항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으로 인터넷접수로 변경됨.(고령자,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은 인터넷접수가 불가능한 경우 현장접수가 가능하나 14:00시까지 접수해야 하며,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오셔야 합니다.) • 인터넷 접수가 불가능하여 현장에서 접수 시 공급별 구비서류 미비자는 접수가 불가하며, 접수 마감 시간 이후에는 추가로 접수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람.(신청자, 배우자, 세대원 등의 관계 및 신청자격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로 별도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각 유형에서 미달세대 발생 시 타 유형의 특별공급 낙첨자(동일한 주택형의 낙첨자)에게 우선공급하여, 경쟁 발생 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 • 특별공급 주택형별 대상 세대수 합계의 40%를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특별공급 각 유형(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주택형별 낙첨자 중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순번 부여(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14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입주자로 선정)] • 특별공급 당첨자선정 시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140%를 초과할 경우 일부 신청자는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특별공급 당첨세대의 당첨취소, 미계약 등 잔여세대 발생 시 해당 주택형별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중에서 순번대로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잔여세대의 동·호수를 공개 후 이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함.(동·호수를 최초로 배정은 예비 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물량에 미달된 경우,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합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 됨. • 특별공급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 함.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서류 제출 시 무주택증명서류로 우선 확인하며,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원(분리세대 등)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음. •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는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음.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청약 시에는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소형·저가주택 포함)을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당첨자 발표 시 개별통지는 하지 않으며 당첨자 명단에 대한 전화문의는 착오 안내 등의 혼돈 방지를 위해 응답하지 않으니 양해바람. • 당첨자 선정과 동·호수 추첨은 한국감정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일반공급 당첨 대상자와 함께 진행되며 동·호수는 무작위로 결정함. • 인터넷 청약신청 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 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 기간이 상이할 경우,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분양계약 체결 이후라도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제는 물론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 분양 일정 상 계약일 이후라도 아파트 당첨 취소 및 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 특별공급 청약 시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함. • 한국감정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기관추천특별공급, 다자녀특별공급, 신혼부부특별공급,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여 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함.

Ⅲ 견본주택 위치 및 분양문의

- 견본주택 위치 : 경상남도 거창읍 송정리 1090-11
- 분양홈페이지 : http://더샵거창포르시엘.kr
- 분양문의 : ☎ 1600-2446

1600-2446

총 469세대 66㎡·84㎡·109㎡